

계약학과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17.08.01 1차 개정 2018.06.01
2차 개정 2018.09.10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4조의2의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 및 범위) ① “계약학과”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을 위해 전문대학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.

② “채용조건형”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

③ “재교육형”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, 직무능력향상, 전직교육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.

④ “중소기업 재교육형”이라 함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중소기업청에서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.

⑤ 이 규정에 따라 본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(이하 “산업체 등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
2.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(사업주 포함)이상의 사업체
3.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
4. 군부대(장교,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)
5.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(이하 “사업주 단체”라 한다)

제2장 설치 및 운영

제3조(명칭 및 정원) 계약학과의 명칭 및 정원은 본 대학 학칙 별표2에 의한다.

제4조(설치요건 및 학위과정)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.

1. 채용조건형
2. 재교육형
3. 중소기업재교육형

② 계약학과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둔다.

제5조(설치권역 및 계약 체결) ①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(시·도 단위) 내 또는 본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로 한다. 다만,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대학과 동일한 "권역"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함을 명시한 경우, "권역 내"의 계약으로 본다.

②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, 운영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계약학과의 명칭
2.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
3. 설치·운영기간에 관한 사항
4. 등록금과 정부지원금, 참여기업 및 학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
5.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

제6조(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·운영) ①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 있다.

②국가·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,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(채용예정자를 포함)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본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3장 학생선발

제7조(입학자격) ①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계약학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.
2. 중소기업 재교육형 계약학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.

②제1항의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학생의 선발) 학생의 선발은 특별전형을 원칙으로 하며, 계약학과의 특성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등의 전형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.

제4장 수업 및 학사운영

제9조(학기 및 수업) ①학기 및 학점인정 기준은 학칙 제8조 1항 및 제27조에 따른다.

②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과의 학위연계형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. 과정 운영시 교육과정은 현장훈련(OJT)과 현장외훈련(off-JT)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며 운영결과는 정규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③계약학과 수업은 평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8.6.1.>

제9조의2(책임시수) 교원의 책임시수는 강사료지급규정 제3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.
<신설 2018.9.10.>

제9조의3(강사료 계산)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전임교원의 강사료는 책임시수 초과분에 한해 시간당 5만원으로 책정하며, 출장여비는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 <신설 2018.9.10.>

제10조(학사관리)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사항은 본 대학 학칙에서 규정한 일반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11조(제적) 본 대학 학칙 제21조에 해당되는 자 및 계약당사자인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를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자는 총장이 제적 처분할 수 있다.

제5장 운영위원회

제12조(운영위원회 설치)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용한 사항을 종합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둔다.

제13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위원회는 산업체 및 기관 관계자, 해당학과 학과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.

제1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계약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, 학생선발에 관한사항
2.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
3. 학과운영 계획 및 예산수립에 관한사항
4. 학교와 산업체간 상호지원에 관한사항
5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.